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2
------	------

2023. 9.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수정안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가. 제안이유

-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직급 조정 및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市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율적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직급 상향으로 정원 조정(기존 5급 → 개정 4.5급)
 - (직속기관) 일반직 5급이하 $\Delta 1$ → (본청) 4.5급 +1

- 서울시립대학교 학부 신설(1개)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임교원(11명) 및 조교(2명) 증원
 - 2024년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 교원 충원에 따른 인력 증원(교원 11, 조교 2)
 - (일반직공무원) 5급이하 $\Delta 13$ → (교육공무원) 교원 +11, 조교 +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기존 5급 → 개정 4·5급)과 서울시립대의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인력 증원(교원 11, 조교 2)을 공무원 총 정원(19,167명)의 변동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됨.
- 변동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민방위경보통제소 소관 변경에 따라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직속기관) 일반직 5급이하 △1 → (본청) 4·5급 +1]
 - 학부 신설,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른 서울시립대의 인력 증원[(일반직공무원) 일반직 5급이하 △13 → (교육공무원) 교원 +11, 조교 +2]

< 정원 조정 내용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 무	일반									별 정	연 구	지 도	소 방	경 찰	교 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관						
현 행	19,167	4	10,715	7	26	18	5	258	9	10,235	157	37	408	25	7,434	3	541
개편 후	19,167	4	10,702 (△13)	7	26	18	5	258	10 (+1)	10,221 (△14)	157	37	408	25	7,434	3	554 (+13)

나. 민방위정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5급이하 △1, 45급 +1)

- 동 개정안은 민방위정보통제소의 소관을 ‘비상기획관’ 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통신 6급)을 줄이고, 45급 정원 1명을 늘려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민방위정보통제소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21명[전문경력관(나군) 포함 시 총 22명]이 이관하며, 서울시는 비상시 군 및 민방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4급 상당의 외부 전문인력을 임용할 계획임.
- ※ 정보, 통신, 방공 병과 중 소령 이상 예비역으로 민방위 경력자를 우대요건 등에 반영

<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정원 이관 내역 >

구 분	계	일 반 직							관리운영
		소계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변경 전	21	20	-	1	2	8	7	2	1
변경 후*	21	21	1(+1)	1	1(△1)	8	7	2	1

* 행정4·5급 +1(개방형), 방통5급 +1, 방통6급 +1, 방통7급 +8, 방통8급 +5, 방통9급 +2, 전기8급 +1, 전기운영6급 +1, 운전8급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직급기준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10

1) 별표 2 제2호의 비교 제4호.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명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복수직급제), 동 개정안은 현재 4.5급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므로 별표상의 직급기준은 충족함.

- 한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예규)²⁾에 따르면, 민방공경보 발령 업무는 사실상 군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군 및 민방위 경력의 외부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정책조정기능의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라는 복수직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4.5급으로의 직급 상향이 외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시됨.
- 특히 다른 시·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책임자의 직급 대부분이 5급인 점을 고려하면, ‘직급 상향’과 ‘원활한 민방위 경보 업무 운영’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동 사무의 직급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의 민방위 경보 통제소 책임자 직급 현황 >

연번	지자체명	경보 통제소 책임자 직급
1	서울특별시	5급

2)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2	부산광역시	5급
3	대구광역시	5급
4	인천광역시	5급
5	광주광역시	전문경력관 가군
6	대전광역시	5급
7	울산광역시	5급
8	세종특별자치시	5급
9	경기도	5급
10	강원도	5급
11	충청북도	전문경력관 가군
12	충청남도	5급
13	전라북도	5급
14	전라남도	5급
15	경상북도	5급
16	경상남도	5급
17	제주특별자치도	5급

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원 증원[증원 13명(교수 +11, 조교 +2)]

- 동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학부 신설,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기존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정원 13명을 줄이고, 교육공무원 정원 13명(교원 11명, 조교 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립대의 증원 내용 >

구분	증원 분야	증원 인원	증원 사유
	계	11명	
전임교원	지능형반도체	6명	학부 신설, 입학정원 증원
	인공지능	1명	
	통계	1명	
	스마트시티	1명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생명과학	1명	바이오의약 전공 인력 보강
	외국인	1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	2명	
조교	일반대학원	1명	학과 관리 업무 효율성을 위한 증원
	첨단융합학부	1명	학부 신설에 따른 인원 증원

- 전임교원 증원의 주된 사유는 2024학년도에 첨단융합학부(입학정원 20명)³⁾가 신설되고, 첨단 분야의 일반대학원 입학정원⁴⁾(161명 증원)이 증가하기 때문임.
- 현재 첨단융합학부 지능형반도체 전공 분야는 전임교원이 없으며⁵⁾, 2023년도 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입학정원(65명)과 2024년도 첨단융합학부 지능형반도체 전공 입학정원(10명)이 증원되어 총 6명의 전임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2023년도 일반대학원 입학정원(25명)이 증원되었으며, 2024년도 첨단융합학부 첨단인공지능 전공 입학정원(5명)의 신설에 따라 1명의 증원을 반영한 것임.
- 그리고 서울시는 2023년도 첨단 분야 일반대학원의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25명)와 스마트시티학과(46명)의 입학정원 증원으로 각각 1명씩 2명의 전임교원 증원을 요청하였고, 생명과학과의 2024년도 세부 전공분야인 ‘바이오의약 전공’ 전임교원이 필요하여 1명을 반영함.
-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학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을 1명 증원함.

3) 융합바이오헬스 전공(학생입학정원 5명), 첨단인공지능 전공(5명), 지능형반도체 전공(10명)

4) 일반대학원 첨단 분야 4개 학과 :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시티, 통계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5) 전임교원이 필요한 세부 전공분야 : ① 뉴로모픽 소자 ② Processing-In-Memory기술(회로/시스템) ③ 3차원 및 이종 집적 공정 기술 ④ 인공지능 가속 시스템 아키텍처(인공 지능 융합) ⑤ 딥러닝 기반 지능형 반도체 모델링(반도체 이론) ⑥ 시냅스 소자 응용 재료

- 현재 서울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22년 기준 91.41%로, 2020년 88.48%에 비해 2.93%p 상승하였으며, 교원 현원도 2020년 430명에서 2022년 447명으로 증가한 상태임.

<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

(단위 : 명, %)

대학별	학 생 편제정원(A)	교 육 부 법정정원(B)	교원현원 (C)	교원1인당 학생수(A/C)	교원확보율 (C/B×100)
2020	10,695	486	430	24.87	88.48
2021	10,769	490	441	24.42	90
2022	10,732	489	447	24.01	91.41

※ 자료 : 대학알리미

- 그러나 주요 국립대의 교원확보율과 비교해볼 때, 서울시립대의 교원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 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

(단위 : 명, %)

대학별	학 생 편제정원(A)	교 육 부 법정정원(B)	교원현원 (C)	교원1인당 학생수(A/C)	교원확보율 (C/B×100)
서울대	30,756	1,659	2,278	13.5	137.31
충남대	21,721	1,097	1,029	21.11	93.8
경북대	28,111	1,432	1,386	20.28	96.79
전북대	21,491	1,103	1,083	19.84	98.19
제주대	11,332	555	648	17.49	116.8

※ 출처 : 2022년 기준 대학알리미

- 이와 더불어 서울시립대는 전임교원의 정원을 확대해도 인력 충원이 학과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확보한 정원 내에서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서울시립대 전임교원의 정·현원 현황 >

(2023.8.18.기준 /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비고(여성 수)
교 수	계	466	449	△17	86
	총장	1	1	-	-
	부총장	2	1	△1	-
	전임교원	463	447	△16	86

- 그 밖에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4개 학과(재난과학과, 스마트시티학과,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 지능형반도체)의 통합·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따른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일반대학원 및 첨단융합학부 각각 1명씩 2명의 조교를 증원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립대는 조교 1인당 재학생 수가 131명으로, 17개 국립대의 평균인 117명에 비해 담당 학생 수가 많으므로 개정안의 조교 증원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립대 조교 1인당 재학생 수 >

구 분	서울시립대	17개 국립대 평균
조교 1인당 재학생 수	131명	117명

* 2022. 4. 1. 기준

** 재학생: 학부, 일반대학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타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직급 체계 고려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이 원활한 경보 업무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조정의 필요성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기존 5급 → 개정 4.5급)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삭제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52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타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직급 체계 고려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이 원활한 경보 업무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조정의 필요성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기존 5급 → 개정 4.5급)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삭제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4의 표 중 4·5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2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 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 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의제 행정기 관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 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의제 행정기 관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 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의제 행정기 관
총 계	11,730						총 계	11,730						총 계	11,730					
(생 략)							(생 략)							(생 략)						
일반직 계	10,715						일반직 계	10,702						일반직 계	10,702					
(생 략)							(생 략)							(생 략)						
4·5급	9	9					4·5급	10	10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35						5급 이하 소계	10,221						5급 이하 소계	10,222					
(생 략)							(생 략)							(생 략)						
교육공무원 계	541						교육공무원 계	554						교육공무원 계	554					
(생 략)							(생 략)							(생 략)						
교수 등	465			465			교수 등	476			476			교수 등	476			476		
조교	75						조교	77						조교	77					
(생 략)							(생 략)							(생 략)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534명”을 “10,5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41명”을 “554명”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5급 이하 소계란,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2					
5급 이하 소계	10,222					
교육공무원 계	554					
교수 등	476			476		
조교	77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6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534명</u></p> <p>2. (생략)</p> <p>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u>541명</u></p> <p>4. ~ 6. (생략)</p>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p> <p>1. ----- -----: <u>10,521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 -----: <u>554명</u></p> <p>4. ~ 6. (현행과 같음)</p> <p>[별표 4]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0,71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u>10,23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교육공무원 계</td> <td><u>54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교수 등</td> <td><u>465</u></td> <td></td> <td></td> <td><u>465</u></td> <td></td> <td></td> </tr> <tr> <td>조교</td> <td><u>7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u>10,715</u>						(생략)							5급 이하 소계	<u>10,235</u>						(생략)							교육공무원 계	<u>541</u>						(생략)							교수 등	<u>465</u>			<u>465</u>			조교	<u>75</u>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0,70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u>10,22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교육공무원 계</td> <td><u>55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교수 등</td> <td><u>476</u></td> <td></td> <td></td> <td><u>476</u></td> <td></td> <td></td> </tr> <tr> <td>조교</td> <td><u>7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u>10,702</u>						(생략)							5급 이하 소계	<u>10,222</u>						(생략)							교육공무원 계	<u>554</u>						(생략)							교수 등	<u>476</u>			<u>476</u>			조교	<u>77</u>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u>10,715</u>																																																																																																																																																																								
(생략)																																																																																																																																																																									
5급 이하 소계	<u>10,235</u>																																																																																																																																																																								
(생략)																																																																																																																																																																									
교육공무원 계	<u>541</u>																																																																																																																																																																								
(생략)																																																																																																																																																																									
교수 등	<u>465</u>			<u>465</u>																																																																																																																																																																					
조교	<u>75</u>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u>10,702</u>																																																																																																																																																																								
(생략)																																																																																																																																																																									
5급 이하 소계	<u>10,222</u>																																																																																																																																																																								
(생략)																																																																																																																																																																									
교육공무원 계	<u>554</u>																																																																																																																																																																								
(생략)																																																																																																																																																																									
교수 등	<u>476</u>			<u>476</u>																																																																																																																																																																					
조교	<u>77</u>																																																																																																																																																																								
(생략)																																																																																																																																																																									